

<p>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간행물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(이하 “발행부서”라 한다)에서 대내·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, 팜플릿, 리플릿, CD, 스티커, 포스터, 영상물을 말한다.</p> <p>제 4조 제1항 중 “7인의”를 “7인 이내의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 예산 실장”으로 하며, “예산총괄담당관·시정개발담당관·시민과장”을 “예산담당관·조직제도담당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 5조 제1호 중 유사·증복 발간하는 앞에 “간행물 제작의 필요성”을 삽입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및 홍보”는 이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결정</p> <p>제 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.</p> <p>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제 7조 제2항 중 “공보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, “출판관리계장”을 “출판관리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 8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4.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</p> <p>제 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고, 제9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9조(심의 생략) 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생략된 간행물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</p>	<p>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간사는 심의 생략된 간행물을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디자인심의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자인심의소위원회(이하 “디자인소위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디자인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,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디자인소위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, 기타 디자인소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디자인소위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11조(영상물심의소위원회) ① 간행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물의 기획·구성, 연출, 편집·녹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영상물심의소위원회(이하 “영상물소위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영상물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,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 기타 영상물소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2조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2조(의견 청취 등)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(디자인소위 및 영상물소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·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발행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·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</p>
---	--

<p>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·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·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4조(종전의 제12조) 중 제3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6조(종전의 제14조)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8조(종전의 제16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은 각각 이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다음 연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·국·본부장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"시"라 한다)가 실시하는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여론조사의 대외신뢰도 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</p>	<p>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"시정여론조사"라 함은 시의 각종 시책의 수립,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상의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市民 및 공무원 등의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. "통상의 여론조사기법"이라 함은 공중의 의견을 파악함에 있어 정확성·과학성이 여론조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본추출·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방법 등을 총칭한다. "조사설계"라 함은 통상의 여론조사기법에 의한 표본의 추출, 조사방법, 설문내용, 분석방법 등 여론조사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. "주제"라 함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중심내용을 말한다. <p>제 3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,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기타 위원장이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안건 <p>제 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보관 조사방법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론조사 또는 도시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보관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<p>제 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6조(회의) ① 회의는 제3조제1호에 의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</p>
--	--